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1)김 연 주*

I. 서론-사건의 발단	3. 난민전문통역인의 선발 및 교육과정
II.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 개관	4. 난민면접 녹음·녹화 제도
1. 법원판결을 통한 위법성 확인	5. 변호사조력권 및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기자회견	6. 난민심사 및 결과 통지의 통·번역
3. 피해자 증언대회	7.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한 편견과 난민심사 기회의 제한
4. 법무부의 책임인정 및 재심사 방침 시행	IV. 마무리하며- 향후 과제 제안
5. 소결	1. 피해자 및 시민사회의 요구사항과 일부 이뤄낸 성과
III. 사건과 관련한 현행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 서설	
2. 난민심사 공무원의 확보와 전문성, 책임성 강화의 문제	

■국문초록■

2015년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집중·일반·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면서, ‘신속’으로 분류된 심

* 난민인권센터 상근변호사, refugee.yeonju@gmail.com

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 사실조사 생략,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밝혀진 피해사례 모두에서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난민면접이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난민면접을 기초로 하여 내린 난민불인정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적으로 942건을 전수조사하여 55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해 직권취소하였다.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해 위촉과정과 교육을 재정비하고,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며, 난민업무 담당자를 신규채용하고, 2018년 7월부터는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에서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 및 처벌 등의 조치도 진행되지 않는 등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자 피해 당사자들은 2019년 6월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증언대회를 통해 다수의 언론이 이 사건을 다시 이슈화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를 방문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법무부는 이 사건에 관련한 담당자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2월 피해자 피해회복 조치로서 “신속심사가 지시되었던 2015년 9월부터, 난민면접 녹음·녹화를 전면 의무화한 2018년 7월 전까지 아랍어로 난민심사가 진행된 난민신청자 전원에게 다시 난민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심사 방침을 시행하였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

건인 양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사건의 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방안이 미흡한 문제,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의 문제, 난민전문통역인의 부실한 선발 및 교육과정의 문제, 난민심사의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한 문제, 난민면접조서·난민불인정사유서 등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문제 등 난민심사과정 전반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결여가 여실히 반영되어 나타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 본 글에서는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드러난 난민심사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책임자 징계·피해회복 방안·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하여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해 본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인권의 회복을 위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에 대하여, 향후 활동 목표와 그 방향을 잡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난민, 난민법, 난민심사, 난민면접, 면접조서조작, 허위난민심사, 난민인권, 난민인권 침해, 난민통역

I. 서론-사건의 발단

2017년 중순, 난민인권센터(비영리민간단체, 대표: 김규환)에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면접조서를 가지고 찾아왔다. 이들은 주로 2015년과 2016년에 난민신청을 한 자들로, 자신의 난민면접이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면접 당시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생략되었다고 증언했다. 면접조서의 조작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면접조서는 거의 찍어낸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있었다.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신청인이 경험한 사실을 적은 것이 맞나요?”

답: “아니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문: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인가요?”

답: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문: “신청인이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문: “신청인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왜곡된 면접조사를 받고난 후,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유가 적힌 난민불인정결정을 통지받았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법무부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건인 양 이슈화가 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방안이 미흡한 문제,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의 문제, 난민전문통역인의 부실한 선발 및 교육과정의 문제, 난민심사의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한 문제, 난민면접조서·난민불인정사유서 등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문제 등 난민심사과정 전반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결여가 여실히 반영되어 나타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 이 글에서는 먼저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해온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이하 II.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 개관), 위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현행 난민심사제도 및 제도운영의 개선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이하 III. 사건과 관련된 현행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II.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 개관

주요사건 개관

- 2017. 10. 12. 서울행정법원 판결 선고 (절차적 하자의 인정)
- 2018. 7. 1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기
- 2018. 9. 법무부의 자체조사 발표 및 제도개선 시행 약속
- 2018. 9. 18.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 접수¹⁾
- 2019. 6. 18. 피해자 증인대회 진행
- 2019. 7. 23. 법무부 사건 가담 공무원 내부감찰 및 중징계 요구
- 2020. 2. 법무부 제심사 방침 시행

1. 법원판결을 통한 위법성 확인

- 1)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 201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통역인, 난민면접 담당 공무원을 각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소송은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서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개요 및 쟁점은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자료집(미간행)”,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83-84, <https://nancen.org/2086> (2020. 7. 14. 확인) 참고.

가. 서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이 처음 인지된 것은 대부분 난민소송 절차에 서였다. 난민면접조서 및 난민불인정 사유서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심사 과정을 통해,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난민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받은 것인지 피해자들은 알지 못하였다. 변호사 또는 난민단체를 만나게 된 극소수의 난민신청자들이 소송 수행을 위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에 “돈을 벌러 와서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난민인권센터에서도 비로소 이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법원에서 피해자들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였다. 물론 그 과정도 쉽지 않았다. 난민면접이 단 한 건도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증명해 내야 했다. 2017. 10. 12.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사건에서는 면접조서가 진술한 것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신문이 진행되었고, 거의 동일한 취지로 작성된 다른 피해자들의 면접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최초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였다.²⁾

나.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판결은 판결이유에서 난민면접의 중요성과 난민심사관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문제된 사건의 난민면접과정 및 난민면접조서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먼저 “난민인정신청 심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사 절차는 바로 난민면접이고, 이러한 난민면접에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를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의 장이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본국인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인데다가, 외국인인 신청자가 증거자료를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고, 난민심사자 역시 그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수성이 있어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의지하여 난민심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서 난

2)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판결.

민심사에 있어 난민면접의 중요성에 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신청서에 자신의 박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는 있지만, 궁박한 처지의 외국인으로서 그 신청서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난민심사관은 난민면접을 실시하면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박해사항이나 면담과정에서 나온 원고가 받은 위협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신청자의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박해 관련 사항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충실한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한 난민심사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의 확인절차 등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난민신청자의 진술조차 왜곡되어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본적인 박해에 관한 사항조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난민면접은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난민면접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난민불인정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결의 영향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비슷한 시기에 제소된 사건들에서 법무부는 선별적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 판결을 통해 난민심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일부 사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재심사하는 등의 미온적인 조치만 취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위 행정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6. 27. 선고 2017누47245 사건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기자회견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경위 및 진정요지

이렇듯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지 않자 피해자 일부를 조력하고 있던 재단법인 동천과 난민인권센터는 2018. 7. 18. 피해자 5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구한 진정취지는 ①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난민심사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 ② 공무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것, ③ 현재까지의 전수조사 진행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 ④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난민면접 절차를 개선할 것 등이었다.³⁾ 2018. 7. 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제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020년 8월 곧 결과를 앞두고 있다.

나.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인 2018. 7. 18. 난민단체 활동가 및 변호사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상황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하면서도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앞에 서는 것이 또 다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자회견에서의 증언을 위해 모욕적이고 힘들었던 과거 난민면접 과정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도 하였다. 결국 두 명의 피해자가 대표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렇게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이 이슈화되고,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낸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내용은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자료집(미간행)”, 27-48.

과정에는 언론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을 인지한 기자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분노했다. 적극적인 취재가 이어졌으며 아래와 같이 기사화되었다.

- 2018. 7. 17. 자 조선일보 기사 “난민은 ‘탄압 당했다’고 했는데 통역은 ‘돈 벌러 한국 왔다”
- 2018. 7. 17. 자 국민일보 기사 “난민인권센터, 통역 오류 피해 사건 인권위에 진정”
- 2018. 7. 18. 자 한겨레 기사 “영터리 통역·면접조서 조작...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해야”
- 2018. 7. 23. 자 한겨레21 기사 “난민을 불법취업자로 둔갑시키는 통역사들”
- 2018. 9. 2. 자 JTBC 뉴스보도 “[이슈플러스] 돈 벌려고 난민신청? 거짓 조서로 영터리 심사”
- 2018. 9. 6. 자 한국일보 기사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 궁지 몰린 난민신청자

한편, 2018년 기자회견 전후로 JTBC 기자가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면서 법무부에 수차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이 문제되는 시기에 법무부에서 심사적체 해소 T/F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5년 1월부터는 신속·집중·일반·정밀의 4단계로 난민신청 건을 분류하여 단계별로 심사 대상, 방법 및 처리기간을 지정하는 지침을 운영하였는데, 면접조서 조작(허위작성)이 문제된 사건들은 모두 ‘신속’으로 분류되어 간이 면접 후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⁴⁾

2018. 9. 6. 질의회신

(질의 1) 저희가 확인한 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법무부에서는 난민심사 적체방안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적체 해소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경우 난민심사 T/F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영터리 난민심사가 이뤄진 것이 이 같은 법무부의 내부 지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과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답변)

○ 최근 다년간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반면, 난민심사 인력 증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대기 적체가 심각(난민법상 심사처리기한 6개월)하여 심사적체 해소

4)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자료집(미간행)”, 69-77.

T/F를 운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적체가 지속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난민신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게 난민신청사유가 아닌 경우 간이 면접 후 심사를 종료하였습니다.

○ 다만, 2017년 10월 절차적 하자로 인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판결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토록 하는 등 보다 충실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패소한 면접조서와 유사하게 작성된 건에 대해서는 재면접하여 난민인정여부를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2018. 9. 7. 회신

(질의 5) 왜 2015년 1월부터 지침이 바뀌었는지, 누구(혹은 직급, 직책)의 기안과 누구(혹은 직급, 직책)의 최종 결재로 이 같은 변경이 이뤄졌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 난민심사 환경과 적체 요인의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난민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속·집중·일반·정밀의 4단계로 난민신청 건을 분류하고 단계별로 심사 대상, 방법 및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2015. 1. 1.부로 운영하도록 산하기관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18. 9. 19. 회신

(질의 3) 질의 6에서 신속은 간이면접 대상자 중 최종 기각결정을 받은 자, 재신청 중 남용이 명백한 경우 이뤄진다고 했는데 재판서 패소하거나 자체 취소한 케이스 57건의 경우 모두 최초 신청인데요. 이건 어느 심사로 이뤄진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 절차적 하자로 국가 패소한 2건을 포함하여 직권취소한 55건은 난민전담공무원이 신청당시 기재사항과 난민면접 시 진술이 다른 경우 또는 명백히 난민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건으로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심사 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사유 및 박해 중심으로 면접 실시 및 조서 작성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언론보도의 영향

법무부는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되면서, 위 2018. 9. 6. 자 “누명 띄우고 추방 위협” 궁지 몰린 난민신청자” 한국일보 기사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래와 같이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국가패소한 사건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비슷한 시기에 면접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55건에 대해 직권취소하고 재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

는 중으로, 그중 2건 난민인정, 44건 난민불인정결정 하는 등 현재까지 53건(철회 등 7건 포함)을 처리완료 하였음”을 밝혔다.⁵⁾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 처음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 한편, 2017년 10월 이집트인 남성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국가패소한 사건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비슷한 시기에 면접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 총 55건에 대해 직권취소하고 재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그 중 2건 난민인정, 44건 난민불인정결정 하는 등 현재까지 53건(철회 등 7건 포함)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 또한, 상기 판결 이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난민면접시 녹음·녹화 전면 실시, 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 확대(연 5~6회), 기존 난민전문통역인 재정비 및 보수교육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력증원을 포함하여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3. 피해자 증언대회

가. 피해자 증언대회 진행 경위

법무부는 위와 같이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어떠한 범위와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하였고, 직권취소할 사건을 선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해당 공무원들은 출입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지 약 2년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권취소가 된 피해자들마저도 직권취소가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일체의 사과도 듣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불안정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난민신청자도 발견되었다. 한 피해자는 조작된 난민면접조서가 오히려 난민반단체에 의해 난민반대집회의 자료로 이용되면서, ‘가짜난민’의 오명을 쓰고 혐오 공격의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⁶⁾ 2019년 세계난민의 날을 앞둔 2019년 6월 18일,

5)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까지」 제하 기사 관련, 법무부 설명자료 (2018. 9. 6.).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당시 한 피해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 증언대회에 나올 수 없었고, 한 피해자는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얼굴과 목소리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증언대회를 1분 앞두고 얼굴을 드러내어 발언하기로 결심하였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증언대회가 열리는 순간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의 ‘난민 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 경과로 시작하여, 사브리(Sabry), 무나(Muna, 가명), 라힘(Rahim, 가명), 아미르(Amir, 가명, 대독), 아담(Adam) 5인의 증언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나.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

피해자의 증언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① “2016년 7월, 저는 망명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군부쿠데타 이후 또 다른 고달픈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해진 면접조사 중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심사관은 저에게 제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심사관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 정부가 행하는 정식 면접을 받는 중입니다. 제대로 행동하세요.” 또한 심사관은 면접 도중 저에게 “입 다물어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심사관에게 제가 질문에 대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려 하자 통역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했을 텐데요.”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심사관과 통역의 행동 역시 너무나도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면접은 조작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심사관이 작성한 면접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제가 난민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이에 대해 자백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이집트에서 아무 직업이 없었기에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서 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 저에게는 외국에서 일하는,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쌍

6) 이대웅, “이집트인들, 난민 신청 탈락했다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5358> (2020. 7. 14. 확인).

7)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Speak Out Against ‘Fabricated Refugee Interviews by the Ministry of Justice’! Booklet (미간행)”,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948> (2020. 7. 14. 확인).

동으로 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 쌍둥이 형제는 당시 수감 중이었습니다.” _ 사브리 (Sabry)

② “면접 당시 직원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질문과 대답은 사실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들어간 뒤에야 직원들은 제게 면접 준비를 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다 한 다음 그들은 제게 면접조서에 서명하라고 하기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30분 정도였습니다. 면접 도중, 여성 직원은 제게 예/아니오 아니면 2-3 단어 내로 짧게 대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만약 대답이 길어지거나 무슨 설명이 포함되면 직원은 제게 신경질을 내며 공격적으로 제 말을 잘랐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끝난 뒤, 통역인은 제게 면접 내용을 인쇄해서 설명해 주고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강요했습니다. 면접 내용은 한국어로 적혀 있어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통역인은 제게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제 개인정보를 읽고, 나머지 부분은 대충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특정 부분을 짚어서 이 부분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가 가르쳐달라고 하자, 그는 이를 읽고 통역해 주었으나, 그가 읽은 내용은 정확하지 않았고, 제가 대답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단어 한 단어 전부 통역해 주지 않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것처럼 해놓았으나 자세히 보면 내용이 달랐습니다. 1년 뒤, 저는 (난민인정을) 거절당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면접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자 면접 도중 제가 대답한 내용과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아예 면접 도중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여권을 발급 받은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한국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그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이 “예,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돌아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_ 무나(Muna)

③) “첫 번째 면접은 한 시간이 채 안 걸렸는데 그녀는 제게 간단히 답하라고 요구하며 여러 차례 자세히 대답하려는 것을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심사관은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며 정보가 필요하면 이집트 정부에 직접 문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사관은 결혼일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제 가족이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와 같은 제가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주로 했습니다. 저의 난민 인정 신청이 처음 거부당한 후 제 변호사가 저의 면접 진술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

회는 진술서에 모두 거짓 정보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여권에 있는 정보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왔고 이집트에서는 어떠한 위험에 처하거나 차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라고 심사관은 적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모든 것이 제가 말하고 적은 내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국제 난민 협약 규정에 준하는 공정하고 편견 없는 조사를 받기 위한 저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_라힘(Rahim)

다. 다수의 언론을 통한 보도 및 추가 정황의 발견

당사자들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날의 기억을 되짚어 가며 경험한 일들과 느꼈던 감정을 생생하게 말로 꺼내놓은 힘은 매우 컸다. 당시 현장을 배곡히 메운 참석자와 기자들은 마지막 증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리고 당일 아래와 같이 다수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여러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면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KBS 하지도 않은 문답 적고...“공무원이 난민 면접 조작”
SBS 난민인권센터 “정부, 난민면접 전수조사·조작 피해자 보상해야”
YTN “면접 서류 허위 작성...난민 심사 탈락”
뉴스스 “법무부, 난민 면접조사 조작했다”...시민단체 주장
동아일보 [단독]면접조사 조작해 떨어뜨린 ‘난민 심사’
민중의소리 “법무부, 난민 면접 ‘조작’해 ‘가짜 난민’ 만들고 있다.”
세계일보 [포토]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
연합뉴스 난민인권센터 “정부, 난민면접 전수조사·조작피해자 보상해야”
중앙일보 “쿠데타 위협에 탈출”을 “돈벌기 위해”로...난민 면접 서류 조작한 직원에 중징계
코리아헤럴드 [Feature] Asylum seekers decry falsehoods abuse in refugee screening
한겨레 인권운동가가 위장취업자로...조작된 법무부의 ‘난민 면접’

피해자 증언대회 이후, 내일신문은 추가 보도를 통해 법무부가 앞서 자체 조사를 하여 직권취소 하였다는 55명 외에 피해사례가 더 있다는 점을 짚으며 법무부 자체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⁸⁾ 실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면접조작의 피해사례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난민인권센터에서만 인지한 사례만 하더라도 20여 건으로, 그중에는 이후 재심사를 통해 2020년 초 난민인정을 받은 예도 있었다. 위 내일신문의 보도는 이후 법무부와 시민사회 간의 피해자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의 장이 열리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피해자 증언대회 전후로 이 사건을 취재한 동아일보 기자는 2015년 9월부터 운영된 법무부의 지침을 입수하여 기사를 통해 공개했다.⁹⁾ 이에 따르면 ① 신속심사 대상자를 난민법(법률 제14408호,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2016. 12. 20.)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면서,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고, ② 신속심사 대상은 면접을 간이하게 실시(1-2시간)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원칙적으로 심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③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면접조서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법무부 지침상의 폭넓은 신속심사 대상자는 법무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유형화한 것이어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기초하여 충실한 심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면접을 간이하게 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할 것을 ‘철저하게 준수’ 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압력을 넣는 일련의 조직적인 지시 아래에서 면접조서가 허위로 조작되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았다.¹⁰⁾

8) 김형선, “‘면접조서 허위기재’ 추가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0111 (2020. 7. 14. 확인); 장병호 외, “[‘나사 풀린’ 국가기관 | ②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허위조서, 최소 5건 더 있다””,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0125 (2020. 7. 14. 확인).

9) 박상준, “[단독]“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807/96860109/1> (2020. 7. 14. 확인).

10)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터의 입장문”,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2019), <https://nancen.org/1946> (2020. 7. 14. 확인).

라. 피해자 증언대회 및 언론보도의 영향

(1) 대한변호사협회의 항의 방문

피해자 증언대회가 있고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7월 8일 ‘난민면접 조작 (허위작성) 사건’에 관하여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인권이사 등 인권위원 8명을 방문단으로 구성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하면서, 재발방지 관련 제도 개선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취소한 사건의 선별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진행 여부에 대한 확인,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및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¹¹⁾

(2) 부분적인 책임의 인정 및 책임자 중징계 요구

2019. 6. 18. 피해자 증언대회와 2019. 7. 8. 대한변협의 항의 방문 직후인 2019. 7. 23. 법무부는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일에 가담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내부 감찰을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¹²⁾ 징계 요구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1인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가 결정되었다.¹³⁾

(3) 특정시기 난민신청자 전면 재심사 방침 시행

법무부가 2018년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기는 하였지만 전수조사 범위와 직권취소의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충실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만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이후에도 직권취소가 되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들이 드

11)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제50-24호 보도자료 (2019. 7. 11.).

12) 법무부,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37552> (2020. 8. 23. 확인).

13) 박상준, “시스템 문제에는 눈감은 법무부[현장에서/박상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BestClick/article/all/20200424/100787794/1> (2020. 7. 14. 확인).

러났다. 피해자 증언대회를 통한 피해자의 폭로가 이어지자 법무부에서는 난민 단체들에게 2019년 7월 협의를 위한 회의를 제안하였다.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하여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들은 법무부 난민과(현 난민정책과)와의 회의에서 현장에서 확인한 피해 사실들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법무부는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진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난민단체의 재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이유를 들며 같은 입장을 고수하였다. 대신 그 대안으로 특정시기에 아랍어로 면접이 진행된 난민신청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방침을 마련했다.¹⁴⁾

법무부에서 정한 재심사 방침 적용범위인 특정시기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면접이 1회 이상 진행된 경우로, 시작 시점인 2015년 9월은 앞서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공개되었던 신속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 생략을 요구한 지침을 시행한 시점이다. 한편 중기인 2018년 6월은 면접이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면접조사가 녹음·녹화되어 있지 않아 의심이 있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면접조사 녹음·녹화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한 시점인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그 직전까지를 적용범위로 정하였다. 아울러 재신청의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는 앞선 난민면접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새롭게 면접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적용대상자에 대해 최초신청과 동일하게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회복하고, 취업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신청 이전에 미등록체류와 미허가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사범처리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재심사 방침은 2020년 2월(2월 11일 경으로 추정)부터 시행되어 2020년 8월 현재까지도 재신청에 대한 접수가 진행 중에 있다.

4. 소결

14) 이재호, “[단독] ‘난민면접 조작’ 피해자 수천 명 재심 기회 얻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41316.html> (2020. 7. 14. 확인).

2017년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사 및 난민단체 활동가 등은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심사가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 해당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8년 9월 법무부 및 관계 공무원·통역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기자회견 및 2019년 6월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통해 사회에 드러났고,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 과정에서 법무부의 조직적인 신속심사 지시 정황 등이 드러나게 되었다. 법무부는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사건이 이슈화되자 2018년 9월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일부 난민불인정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밝혔다. 나아가 2019년 7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조치를 요구했으며, 2020년 2월 피해자 피해회복 조치로서 재심사 방침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Ⅲ. 사건과 관련된 현행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서설

한국은 1992. 12. 3. 국제인권협약인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및 1967년 난민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하여 난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임에 동참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고,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난민수용률이 현저히 낮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투명성·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자 2012. 2. 국내법으로서 난민법(법률 제11298호, 2012.2.10. 제정)을 제정하였다.¹⁵⁾

이에 따라 제정된 난민법은 제2장에서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이라는 표제하에 난민인정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문통역인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수행방식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난민면접을 녹음·녹화하도록 했다. 또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무원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며,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난민 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난민법상의 위 규정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난민심사제도의 문제 현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의 문제제기를 통하여 일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짚어보면서, 여전히 남아 있는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난민심사 공무원의 확보와 전문성, 책임성 강화의 문제

가. 난민심사 인력 부족의 문제

2011년 이후 난민신청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예멘 난민이 한국에 입국한 2018년에는 처음으로 난민신청의 건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2019. 12. 31. 기준 난민신청의 누적 건수는 64,358건에 달하고 있다.¹⁶⁾

<표 1> 1994-2019 난민신청 건수 (단위: 건)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5	2	4	12	26	4	43	37	34	84

15) 난민법 제정이유.

16)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19.12.31.기준)”,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2040> (2020. 7. 14. 11:15 확인).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48	410	278	717	364	324	423	1,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143	1,574	2,896	5,711	7,541	9,942	16,173	15,452	64,358

그러나 난민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난민신청 건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었고, 이는 고스란히 충실하지 못한 심사와 심각한 심사 적체의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 난민심사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 없이 몇 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표 2> 연도별 난민심사담당 공무원 수 (단위: 명)¹⁷⁾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담당자 수	8	32	37	38	65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의 증가와 난민심사 적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심사의 인력과 그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나 난민법상 근거 없는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을 광범위하게 정하여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실상 부실한 심사를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이를 무리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난민심사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의 문제

난민법 제8조 제4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17)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939> (2020. 7. 14. 11:16 확인).

(대통령령 제30278호, 일부개정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제6조에서는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①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난민심사를 전담하는 심사관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난민법의 유일한 규정인데,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일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나아가 난민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년 이상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는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고도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1차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급수별 인원 정보공개결과에 따르면, 난민심사 인력이 대거 충원된 2019년에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하며,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사무소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제주에만 난민법에서 정하는 난민심사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 2019년 1차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급수별 인원 (단위: 명)¹⁸⁾

직급	4급	5급	6급	7급	전문임기제 다급(6급상당)	계
인원	-	4	18	33	10	65

<표 4> 2019년 사무소별 난민심사담당자/ 난민심사관 현황 (단위: 명)¹⁹⁾

	서울	인천 공항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제주	수원	양주	울산	안산	계
1차심사 담당자	33	1	6	12	4	1	4	1	1	1	1	65
난민심사 관	1	-	1	1	-	-	1	-	-	-	-	4

18) 법무부, 2019년도 기준 난민현황 통계,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 (2020. 3. 27.)

19) 위와 같음.

즉, 1차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난민법에서 정하는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²⁰⁾ 법무부에 따르면 위 통계상의 ‘1차 심사 담당자’는 1차 심사 인력의 총 인원으로 난민심사관과 난민접수 및 송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나뉘는데²¹⁾, 난민심사관 이외의 ‘1차 심사 담당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난민법령 등 어디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 피해사례 대부분의 면접조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역시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2019년 8월 7일 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법무부가 2015년 9월 난민심사전담 T/F를 운영하면서 신속심사를 지시한 지침과 관련해 당시 공익법무관이 난민법상 자격 없이 난민심사에 투입되었음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²²⁾²³⁾

5급 이상의 직급이 요구되는 난민심사관의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부산, 인천,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제외하고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거점사무소에 단 한 명의 난민심사관도 없는 상황에서 난민심사관

20) 김대근 외, “난민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7), 85-88.

21) 법무부, 2019년도 기준 난민현황 통계.

22) 박상준, “[단독]“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 (2020. 7. 14. 11:58 확인).

23)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면서 “난민법 제8조제4항은 난민심사절차 중 면접·사실조사를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면접·사실조사를 ‘난민심사관’만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난민법 조항에서 ‘난민심사관이 면접의 전(全) 과정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해석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난민전담공무원이 면접을 실시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난민심사관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라고 해명하였다(법무부, 공익법무관도 난민면접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8.7. 동아일보 “공익법무관이 난민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보도 관련 -, 법무부 설명자료 (2019. 8. 7.). 위 설명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건에서 법원은 “난민법은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과 난민인정 요건들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면접조사를 진행한 후 난민심사관이 총괄하여 그 면접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난민면접이 실시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난민심사관이 직접 난민 면접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 2018.10.17 선고 2017구단734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71801 판결. 법무부 설명자료에서는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적고 있으나, 위 설명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9두38649 판결은 2019.07.25.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다.

의 제대로 된 난민면접 관리·감독 및 난민심사 전담(총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실제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1차 심사 담당자에 대하여 난민법령에서 아무런 자격요건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난민면접의 과정을 살펴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통역인을 거쳐 난민신청자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면접조사 마무리까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면접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난민심사관 등 다른 공무원이 감시를 하거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사례와 같이 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면접조사에 대해 전권을 휘둘러 권한을 남용하거나 제대로 면접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난민면접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난민심사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난민심사의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다. 문제제기를 통한 난민업무 전문 인력 보강 및 교육 강화

2018. 9. 6. 자 설명자료를 통하여 법무부는 난민심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에 따라 2019.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분야 전문가(전문임기제 다급)를 신규 채용하는 공고를 내어 2019. 4.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8명 충원하였다. 그리고 2019. 7. 23. 자 기관소식에서 향후 7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²⁴⁾ 위에서 표로 제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1차 심사 담당자는 2018년도 38명이었던 것과 대비하여 2019. 12. 31. 기준 총 65명으로 확인되고 있다.²⁵⁾

그러나 난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난민심사관의 인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부산, 인천, 제주 출입국 각 1명에 불과하고, 그 밖의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거점사무소에는 아예 난민심사관의 자격을 가진 전담인력이 부재하여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다만, 법무부가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개선안을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법무부는 설명자료

24) 법무부,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25) 법무부, 2019년도 기준 난민현황 통계.

를 통하여 “2018년 1월부터 유엔난민기구(U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²⁶⁾의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2019. 7. 23. 자 기관소식을 통해 2019년 4월부터 역량강화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난민심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²⁷⁾ 2019년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의 교육진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전국 난민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8회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난민관련 온라인 교육과 국외 단기연수 등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과 참가인원은 아래와 같다.²⁸⁾ 또한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2019년 10월까지 기존 난민업무 관련 법령, 지침, 편람 등을 보완·편집한 세부 심사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임을 약속했다.²⁹⁾

<표 5> 난민전담공무원 집합교육 내역

진행일자	교육내용	참가인원
1월 25일	면접기법 및 사례연구(강제결혼, 가정폭력) 등	39명
3월 6일	난민이론 연구(난민인정기준, 구조적 분석법) 등	37명
4월 26일	면접 기법 연구(종교, 특정집단) 등	34명
6월 5일	판례 분석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기준 등	20명
6월 14일	출입국향 난민심사 실무(회부심사의 절차) 등	20명
7월 15일	난민전문통역인 활용방안 및 소그룹 토론 등	21명
8월 26일~ 9월 6일	난민다발지역 정세의 이해 및 난민심사 등	33명
11월 25일~29일	사례 연구(정치적 견해, 동성애) 등	6명

26)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법에서는 제10조에서 ‘사실조사’를 위한 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난민법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20. 3. 27. 법무부의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에 따르면 ‘난민전담공무원’은 1차 심사 담당자 인원에 더하여 통역 및 접수 인력과 난민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난민조사관(난민 이의신청 심의 지원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27)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까지」 제하 기사 관련; 법무부,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28) 법무부, 2019년도 기준 난민현황 통계.

29)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까지」 제하 기사 관련; 법무부,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표 6> 난민전담공무원 온라인교육 및 국외 단기연수

구분	과목명	참가인원
온라인 교육	난민소송실무	142명
	난민심사실무 및 심사기법	224명
	난민인정심사 지침	194명
	난민정책 및 난민법	238명
국외단기 연수	국제 난민법 연수	2명
	난민심판원 연구	3명

법무부가 난민분야 전문가 인력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등 난민심사 담당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1차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총 8회에 불과한 집합교육이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교육 참가인원이 난민전담공무원 총인원 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이수 의무화’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난민신청 건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난민심사 담당 인력은 향후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며,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심사관을 충원하여 난민심사의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1차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1차 심사 담당자)의 자격요건, 전문성, 윤리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역시 양적·질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3. 난민전문통역인의 선발 및 교육과정

가. 난민전문통역인 선발 시스템 구축 및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재

난민신청자의 진술은 난민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 판단을 위하여 정확한 통역은 필수 요소다. 따라서 통역 제공 여부와 통역의 질은 난민지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 ‘난민전문통역인’ 자격을 부여하여 난민심사에서 통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오랫동안 난민인정절차상 통역을 포함한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국내 난민절차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음에도 그간 난민전문통역인을 양성하고 선발하여 다양한 언어의 통역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고, 통역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했다. 난민전문통역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난민전문통역인 자격인정 혹은 적합성 인정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과정 수립과 평가 및 검정이 선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에게 요구되는 통역능력, 난민전문통역인의 선발기준 및 선발방식 등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다.

나. 통역인 교육의 부재

또한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난민전문통역인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아무런 세부규정이 없고 난민전문통역인 활동을 위한 교육예산 역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통역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³⁰⁾³¹⁾

30) 난민인권센터,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2015.5.31.)”,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2015), <https://nancen.org/1404> (2020. 7. 14. 10:00 확인); 난민인권센터, “난민전문통역인교육 콘텐츠 예산 편성의 필요성”,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2016), <https://nancen.org/1539> (2020. 7. 14. 확인)

31) 2018년 이후 난민신청자의 숫자는 매년 1만여 건으로 2013년 난민법 시행당시에 비해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난민관련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에서 매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연도별 난민관련 예산은 2013년 2,069,041,000원, 2014년 2,353,245원, 2015년 2,431,891원, 2016년 2,399,400원, 2017년 2,646,382원, 2018년 2,792,024원, 2019년 2,902,764원으로 나타난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등 처우 지원 예산의 부족으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이 장기간의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생존의 위협을 스스로 감당하며 대기하고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오규욱, “난민 복서 이훈산 통해 본 한국의 난민심사제도 문제”,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42129405> (2020. 7. 14. 11:30 확인); CBS 시사

다. 이 사건 통역인의 자격요건 및 책임의 문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피해사례 대부분의 통역을 맡았던 통역인은 아랍어를 학부에서 이중 전공한 것에 불과하고, 기타 관련 경력 등이 없음에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어 면접을 진행하였다. 통역의 정확성과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난민전문통역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수백 명의 난민면접에 통역인으로 참여하면서 수당을 받았고,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에 적극 가담 또는 방조하였지만 이후 징계 등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법무부는 2018. 9. 6. 자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아랍어권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반면, 기존의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통역인은 대학에서 아랍어를 이중전공으로 이수하였고, '13. 11월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이화여대 통역 번역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난민 법률지원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30시간)하여 난민통역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안

자키 제작진, “난민 위험? 한국은 난민 인정 낮은 세계적국가”,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64580> (2020. 7. 14. 11:36 확인); 이재호, “무자비한 한국 떠나는 예멘인”,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825.html (2020. 7. 14. 11:38 확인); 박소영·박수현,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 궁지 몰린 난민신청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300991393166> (2020. 7. 14. 11:17 확인). ; 난민인권센터, “2019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858> (2020. 7. 14. 확인); 난민인권센터, “2018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813> (2020. 7. 14. 11:18 확인); 난민인권센터, “2017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600> (2020. 7. 14. 11:19 확인); 난민인권센터, “난민 관련 예산(2016)”,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490> (2020. 7. 14. 11:20 확인); 난민인권센터, “난민관련 예산(2015년)”,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323> (2020. 7. 14. 11:22 확인); 난민인권센터, “난민 예산 현황(2014년)”,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140> (2020. 7. 14. 11:23 확인); 난민인권센터, “2013년 난민예산 현황”,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943> (2020. 7. 14. 11:24 확인).

에서 해당 통역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랍권 난민신청자의 통역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에서 말하는 긴박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난민심사에서 통역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무부에서 통역인의 선발과 관리책임을 해태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문제제기를 통한 난민전문통역인 선발 및 교육 진행

2018. 9. 6. 자 설명자료를 통하여 법무부는 2018년 4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풀을 재정비하고, 난민통역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2019. 7. 23. 자 기관소식에서는 2019년 4월 불어 1명, 아랍어 1명의 난민전문 통역인을 추가로 채용하여 2019년 6월 기준 총 2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 173명을 위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2019년 4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9. 12. 3. 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0월 위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 난민심사 담당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난민통역인 역량별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연구 용역 결과 교육 등이 필요한 난민통역인 등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에도 난민통역 품질평가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³²⁾

2019년 기준 난민전문통역인 수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9년 기준 24개 언어 총 173명이 위촉되어 있고, 언어별 세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난민전문통역인이 개별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 난민면접 등 통역수요가 있는 때 각 사무소에 내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아울러 2019년 난민전문통역인 교육은 2019. 12. 20.에 통역실습, 통역기술, 통역인 윤리를 주제로 1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³³⁾ 또한 통역인 교육 필요성 및 예산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촉구³⁴⁾와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문제제기를 통해 때

32)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까지」 제하 기사 관련; 법무부,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33) 법무부, 2019년도 기준 난민현황 통계.

34) 난민인권센터, “난민전문 통역인교육 콘텐츠 예산 편성의 필요성”.

년 난민전문통역비 항목의 예산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표 7>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세부 현황

언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기타	계
인원	19	15	8	8	7	116	173

<표 8> 연도별 난민 관련 예산 (단위: 천원)

연도	2013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난민예산	2,069,041	2,353,245	2,431,891	2,399,400	2,646,382	2,792,024	2,902,764
통역예산	288,000	576,000	576,000	502,000	602,000	754,000	953,000

뒤늦게나마 법무부가 난민전문통역인을 관리하고, 보수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과 같은 난민면접과정의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난민전문통역인의 전문성·윤리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난민면접과정에서 난민전문통역인의 독립성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통역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난민전문통역인에 대한 (재)위촉기준을 강화하고, 꾸준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의 확충 및 다양한 소수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을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난민면접 녹음·녹화 제도

가. 난민면접 녹음·녹화 제도 시행 현황

난민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하

고 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정은 난민지위 인정여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³⁵⁾ 난민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정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위 규정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난민신청자에게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왔다.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내용에 따르면 2015년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 건수는 총 521건, 2016년은 총 335건, 2017년은 총 818건으로,³⁶⁾ (2018년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 건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되었다.³⁷⁾) 난민 면접 녹화제도가 실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녹음녹화의 활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난민심사건수에 비해 녹음녹화가 진행된 건수는 현저히 적은 실정이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피해 사례 중에서도 역시 단 1건도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례가 없었다.

나. 문제제기를 통한 난민면접 녹음·녹화 전면실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난민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하고, 요청이 없더라도 재량으로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난민신청자에게 위의 권리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난민면접이 녹음 또는 녹화가 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8. 9. 6. 자 설명자료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난민신청자 본인이 원치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과정을 전면적으로 녹음·녹화하여 난민면접의 정확성을 확

35)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사람은 최소의 필수품만을 가지고, 대개 신분증조차 없이 도착한다.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96항. 이와 같은 난민의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방법이 된다.

36)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심사현황 (2017.12.31.기준)”,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689> (2020. 7. 14. 11:49 확인).

37)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³⁸⁾ 실제로도 난민면접 시작 시에 녹음·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였다는 점을 면접조서에 “면접 녹화 고지 필” 등의 형태로 기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9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공개자료에 따르면 면접 영상녹화가 대부분의 난민면접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⁹⁾

<표 9> 2019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 현황 (단위: 건)

구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여수	화성 보호소	청주 보호소	인천 공항
면접건 수	3766	749	509	106	501	241	21	11	3	147
실시건 수	3705	737	499	106	481	213	21	11	3	147
미실시	61	12	10	0	20	28	0	0	0	0

다. 영상녹화 파일 공개 제한의 문제

난민면접에 대한 영상녹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난민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의무적으로 난민면접에 대한 영상녹화를 시행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다만 법무부는 내부 난민심사업무처리지침(비공개 지침)에 의거해 열람까지는 가능하지만 영상녹화 기록을 파일로는 공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⁰⁾ 그런데 난민면접 영상녹화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통역인 및 조력자를 선임하여 출입국이 지정한 날짜에 출입국 내부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열람할 수밖에 없는 등 많은 한계를 가진다. 2019년 영상녹화 기록 열람신청 및 허가 건수에 관한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난민면접 영상녹화 전면실시로 대부분의 난민신청에 대한 영상녹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 열람신청 및 허가 건수는 전국 사무소 기준으로 2건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그러나 영상녹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리구제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역인, 변호사 등 조력인과 함께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

38)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까지」 제하 기사 관련.

39) 법무부, 2019년도 기준 난민현황 통계.

40) 김광연, “‘난민 심사면접 영상녹화제도’ 5년째 정착 못해”, 뉴스토마토, <http://healthtomato.com/view.aspx?seq=901741> (2020. 7. 25. 17:17 확인).

41) 법무부, 2019년도 기준 난민현황 통계.

이 필요하다. 난민면접 영상녹화의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난민면접 영상 녹화 기록 파일을 교부 받고 이를 자신의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을 바꿔야 하는 개선과제가 남아 있다.

<표 10> 2019년 영상녹화 파일 열람신청 및 허가 건수

구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여수	화성 보호소	청주 보호소	인천공 항
신청	2	0	0	0	0	0	0	0	0	0
허가	2	0	0	0	0	0	0	0	0	0

5. 변호사조력권 및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난민심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⁴²⁾ 이 규정은 난민신청과 심사진행 과정, 특히 난민면접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에 이를 선언하는 차원의 법조문 하나만 있을 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사제도와 같은 제도가 없어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변호사 조력 없이 난민신청 과정을 혼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난민면접에 동

42) 난민신청자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국가 기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건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98항.

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전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사 신뢰관계 있는 사람으로 동석신청을 하여도 많은 경우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단 한 건도 변호사의 조력이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거나, 난민면접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었을 경우, 심사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의 조력이 잘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개선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6. 난민심사 및 결과 통지의 통·번역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난민면접이 조작되었고,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는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고, 아무런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난민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적법·타당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초자료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방어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난민신청자가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하고 난민신청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권리보장에 직결되는 문서에 대한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 사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만을 통지 받고 있고,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반박이나 소명 없이 기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⁴³⁾ 또한 자신의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접 당시 통역인이 확인해 주는 것에 의존할 수

43) 김대근 외, “난민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0-91.

밖에 없으며, 정확성을 달리 검증할 길이 없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자신의 면접조서와 난민불인정사유서에 적혀 있어도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초적인 문서에 대한 통번역 제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심사기관의 의무에 대해 오랜 기간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러한 의무의 해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난민면접조서 및 난민불인정사유서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의 미제공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7.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한 편견과 난민심사 기회의 제한

2018년 9월 7일 자 JTBC 기자 정보공개청구 자료⁴⁴⁾ 및 2019년 8월 7일 자 “[단독] “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드러난 신속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았다.⁴⁵⁾

지침상의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

① 거짓 서류 및 거짓 진술자, ② 남용적 재신청자(3심 종료 등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은 자, 재신청이 협약상 난민신청 사유가 아닌 자, 1차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 후 최초 신청과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미흡한 자), ③ 1년 이상 체류 후 체류기간 만료 임박 신청자(E-9 등), ④ 강제퇴거 집행 지연 목적 신청자, ⑤ 협약상 사유가 아닌 신청(토지 분쟁 등 사인간의 박해), ⑥ 족장승계, 컬트, ⑦ 본국에서 비정치적 중범죄자

위 지침에서 법무부는 신속심사 대상자의 분류가 마치 난민법 제8조 제5항에 근거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지만, 난민법 제8조 제5항에서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는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⁴⁶⁾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44)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자료집(미간행)”, 69-77.

45) 박상준, “[단독] “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

46) 난민법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로 위 지침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속심사 대상자는 난민법 제8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신청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지침상 대상자 유형 중 ②번의 남용적 재신청자로 분류하고 있는 신청자 유형은 과도하게 포괄적이며, ⑤번에서는 협약상 사유가 아닌 신청의 예시로 ‘토지 분쟁 등 사인간의 박해’를 들고 있으나 이 토지분쟁을 포함한 사인간의 박해 역시 경우에 따라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상 5가지 사유⁴⁷⁾와 관련이 있고, 국가가 개입하여 사인의 박해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면 협약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협약상 사유가 아닌 신청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⑥번에서 열거하고 있는 ‘족장승계, 켈트(가입거부)’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전통적이고, 유형화된 난민사유 중 하나이며⁴⁸⁾,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심사를 통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평

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47) 인종(race), 종교(religion), 국적(nationality)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또는 정치적 견해(political opinio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93. 3. 3. 발효, 제1조.)

48) 호주 판례인 RRT case no.0805340 [2008] RRTA 418 사건은 기독교인인 신청인이 살인과 폭력을 일삼는 A단체(켈트)의 강제 가입 요구를 거부하여 박해를 받아 도피한 사례에 대하여 재판소는 ‘나이지리아 내 켈트(단체)에 가입하기를 거부한 젊은 기독교인 남성’이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약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하였다. 재판법인 동천, “국내 난민신청 이슈에 기초한 주요 수용국의 난민판례연구”, 2012년 법무부 정책연구용역, 55-56에서 재인용.

가가 특히 중요함에도, 오히려 신속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사실상 난민불인정결정을 유도하는 것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한편,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①번 유형인 “거짓 서류 및 거짓 진술자”로 분류되어 신속심사 대상자 유형으로 포함된 사례들이었는데, 실제 피해사례들에서는 난민신청자가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거나 거짓 진술을 했다고 불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없이 지침을 통해 신속심사를 지시할 대상자 유형을 정해놓았다는 것 자체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상의 난민요건에 따라 심사해야 할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며, 특정한 난민신청자 유형에 대한 법무부 및 심사기관의 편견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부실심사를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지시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행위는 예단 없이 심사해야 할 심사관에게 오히려 특정 분류 난민신청자에 대한 편견과 예단을 조장하는 것으로 심각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신속심사 지침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특정 시점부터 체류 지침을 엄격하게 강화하더니 ②번과 ③번 유형의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자로서의 체류자격을 박탈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난민심사를 받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⁴⁹⁾ 이것 역시 난민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자의적 행정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 당시 신속심사 지침, 그리고 현재 체류제한 지침의 운영 등 특정 난민신청자를 유형화하여 난민심사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부터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과도하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IV. 마무리하며 - 향후 과제 제안

49) 난민인권센터, “지금,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nancen.org/1835> (2020. 7. 14. 12:13 확인).

1. 피해자 및 시민사회의 요구사항과 일부 이뤄낸 성과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피해자 증언대회를 통해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난민면접조작 사건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 할 것
- ② 면접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되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를 제공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
- ③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밝혀 처벌할 것
- ④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 ⑤ 재발방지를 위해 난민심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이 가운데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었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해 재심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징계요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난민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과 통역인 일부 확충이 있었고, 난민면접 녹음녹화의 고지가 의무화되었다.

처음 난민단체들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2017. 12. 26. 있었던 난민 인권네트워크와 법무부 난민과(현 난민정책과)와의 협의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을 당시 법무부는 면접조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면접조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그간 여러 차례 개선이 촉구되었던 난민심사 제도 운용의 일부가 실제 바뀌는 변화를 이끌어 냈고, 책임자 징계· 피해회복 방안의 마련 등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왔다. 문제제기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성과는 있었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는 벌써 5년 가까이 지났고, 문제제기가 처음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도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며 이미 일부 피해자들은 한국을 떠나기도 하였고, 구제절차가 진행되기 전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명확한 책임인정이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심사 방침이 시행되었지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을 알리고, 이의제기를 위한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함께 문제제기를 하였던 피해자들은 많이 지쳤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2차의 피해를 겪고 있다. 허위로 작성된 난민면접조서가 난민수용 반대를 외치는 집단에 의해 활용되어 언론 등을 통해 ‘가짜난민’의 오명을 쓰기도 하였고, 국가와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은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미 재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된 피해자에 대해 다시 한 번 난민사유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하며 검증하려는 시도가 지난하게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진행, 내부 전수조사 진행, 피해자 재심사 방침 등을 시행하며 이 사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전히 신속심사 지침 등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내린 지시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침해된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근거일 것이다. 또한 재심사 방침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충실한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난민심사 공무원 일부 충원, 난민면접 녹음·녹화 의무화, 난민통역인 검증 시스템 강화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난민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난민신청서나 난민불인정 사유서 등 기본문서에 대한 통·번역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신청자 등에 대한 체류 제한을 가하는 등 법무부의 편견에 기반해 특정 난민신청자를 유형화하여 난민심사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또 다른 지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난민신청자의 인권은 침해되고 있다. 제 2의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결국 공정하고 충실한 난민심사가 진행되고,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신청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향후 지속적인 난민심사 제도의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제50-24호 보도자료 (2019. 7. 11.).
-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까지」제하 기사 관련, 법무부 설명자료 (2018. 9. 6.).
- 법무부, 2019년도 기준 난민현황 통계, 난민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 (2020. 3. 27.).
- 법무부, 공익법무관도 난민면접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8.7. 동아일보 “공익법무관이 난민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보도 관련 -, 법무부 설명자료 (2019. 8. 7.).
-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014. 9.).
- 김대근 외, “난민심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 RRT case no.0805340 [2008] RRTA 418
-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판결.
- 난민법(법률 제11298호, 제정 2012. 2. 10., 시행 2013. 7. 1.)
- 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78호, 일부개정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93. 3. 3. 발효, 제1조.
- CBS 시사자키 제작진, “난민 위험? 한국은 난민 인정 낮은 세계적국가”,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64580> (2020. 7. 14. 확인).
- 김광연, “난민 심사면접 영상녹화제도” 5년째 정착 못해”, 뉴스토마토, <http://healthtomato.com/view.aspx?seq=901741> (2020. 7. 25. 확인).
- 김형선, “면접조서 허위 기재’ 추가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0111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Speak Out Against ‘Fabricated Refugee Interviews by the Ministry of Justice’! Booklet (미간행)”,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948>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난민인권센

- 터의 입장문”,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2019), <https://nancen.org/1946>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939>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심사현황 (2017.12.31.기준)”,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689>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19.12.31.기준)”,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2040>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2013년 난민예산 현황”,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943>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2017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600>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2018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813>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2019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858>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난민 관련 예산 (2016)”,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490>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난민 예산 현황(2014년)”,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140>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2015.5.31.)”,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2015), <https://nancen.org/1404>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난민관련 예산(2015년)”,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323>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자료집(미간행)”, 난민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2086>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난민전문 통역인교육 콘텐츠 예산 편성의 필요성”, 난민인권센터 홈페
이지 (2016), <https://nancen.org/1539> (2020. 7. 14. 확인).
- 난민인권센터, “지금,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s://nancen.org/1835> (2020. 7. 14. 확인).
- 박상준, “[단독]“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 동
아 일 보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807/96860109/1>

(2020. 7. 14. 확인).

박상준, “시스템 문제에는 눈감은 법무부[현장에서/박상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BestClick/article/all/20200424/100787794/1>
(2020. 7. 14. 확인).

박소영·박수현, ““누명 씌우고 추방 위협” 공지 몰린 난민신청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300991393166> (2020. 7.
14. 확인).

법무부,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 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37552>.

오규욱, “난민 복서 이흑산 통해 본 한국의 난민심사제도 문제”,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42129405> (2020. 7. 14. 확인).

이대웅, “이집트인들, 난민 신청 탈락했다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5358> (2020. 7. 14. 확인).

이재호, “[단독] ‘난민면접 조작’ 피해자 수천 명 재심 기회 얻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41316.html> (2020. 7. 14. 확인).

이재호, “무자비한 한국 떠나는 예멘인”,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825.html (2020. 7. 14. 확
인).

장병호 외, “[‘나사 풀린’ 국가기관 | ②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허위조서, 최소
5건 더 있다””,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0125
(2020. 7. 14. 확인).

|Abstract|

The problems of the Refugee Review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revealed by ‘cases of fabricated refugee interview’, and the procedures of civil campaign for their resolution

⁵⁰⁾Kim Yeonju*

In 2017, it was discovered that the interview records of many Arabic refugee applicants who had applied for refugee recognition at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had been fabricated. The majority were interview records of refugee applicants from Arabic-speaking countries such as Egypt, Sudan, Morocco, Libya who had applied for refugee recognition from 2015 to 2016; all the record had the signature of the same interpreter at the bottom. According to the victims, not only were their interviews for refugee recognition done in haste, typically within 20 to 30 minutes, but also they were given no opportunity to fully elaborate on their case and review how their testimony was incorporated into the interview record. Despite the Refugee Act, not a single victim could have their interview audio-recorded or video-taped. The extent of fabrication was quite severe. The record of each of the refugee applicants contained surprisingly similar questions and answers in response to: “Did you actually experience what you wrote in your refugee application?” “No, I did not, I got the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Is what you wrote in your refugee application true?” “No, it is not.” “Why did you apply for refugee recognition?” “To stay in Korea for work.” “Will you face any persecution or danger if you return to your home country?” “No, I will not.” After a fabricated refugee recognition interview, each victim was handed

* Lawyer,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refugee.yeonju@gmail.com

a Notice of Denial letter, written in Korean, that read “this applicant does not qualify as a refugee because he/she came to Korea for economic reasons.”

The victims appeal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after the initial denial, only to receive the same denial letter after a long wait, and later initi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victims were not aware that their interview records had been fabricated until recently. A handful of them who received legal assistance during the litigation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ir records had been fabricated—only then did this fabrication issue come to light. There may be other refugee applicants not even aware of the fact that their interview records had been fabricated due to lack of legal assistance. In two court cases, bo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 recognized that “refugee recognition interviews were done in such an abrupt manner that they became almost meaningless,” and decided that any determination on refugee recognition made on the basis of such interviews “were procedurally defective.” In July 2018,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and the Dongcheon Foundation submitted a complai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revealed in a press release in September 2018 that they had cancelled denial of refugee status on 55 victims. In addition, measures were taken since July 2018 to inspect appointment and education of refugee interpreters, expand education of refugee affairs, hire new officers for refugee affairs, and conduct full-scale recording of refugee interviews nationwide. But none of the officers implicated in this incident were penalized, and all of them still remain in their posts at the Immigration Office. This issue was first disclosed two years ago, but no remedy has been provided to most of the victims. Hence the victims held a rally with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in June 2019 to raise accusations on the Justice Ministry's lukewarm attitude. The case was widely covered by a number of media,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visit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delivered their opinion on the ‘cases of fabricated refugee interview’. Accordingly, in July 2019, the Ministry of Justice conducted an internal

inspection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and demanded heavy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Central Disciplinary Commission. In addition, as a measure to recover victims' damages, in February 2020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ed a review policy that all refugee applicants who had been screened in Arabic from September 2015, when the expedited screening policy was ordered, to July 2018, when recording of refugee interviews became mandatory, will be given opportunity to apply for refugee status again.

When this incident first surfaced, the Ministry of Justice attempted to place all the blame on the implicated officers and the interpreters. However, what the press disclosed was contradictory to what the Justice Ministry had first claimed: three officers were involved in this incident, and the 55 cases were aftermath of the expedited screening policy implemented in lieu of the Ministry's Asylum Backlog Reduction Task Force since 2015. It is thus more than apparent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systematically been involved in fabrication of the records. In short,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 fact creating the illusion of 'fake refugees' and 'refugee recognition applicants who exploit the Refugee Act'. In addition, there remains insufficient protection of rights of refugee applicants, namely lack of recording of refugee screening and legal assistance, inadequate qualification and responsibility of officers in charge of refugee screening, questionable appointment and curriculum of refugee interpreters, lack of personnel and support system for refugee screening, and the fact that in general even the most basic documents such as refugee interview reports and refugee recognition documents are only provided in Korean. In this article, diagnosis of the status of the refugee screening system in Korea will be implemented through review of the 'cases of fabricated refugee interview' and records of civil campaign against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ir resolution.

Keywords : Refugee, Korea Refugee Act, Refugee interview, Fabricated Refugee Interview, refugee screening procedure, Refugee System in Korea, Refugee Human Rights,

Refugee Human Rights Violation, Refugee Interpretation